

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」이 개정('25년 7월 1일 시행)되어 장기요양수급자 중 갱신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(이하 '유효기간')이 연장 적용되었습니다.

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계약기간과 유효기간 연장은 별개입니다.

- ①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,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통보 없이 해당기간 동안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.
- ②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(계약서 작성 필수)하고,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.
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인정서 등 서류 재발급 절차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, 대상자에게 [붙임1]과 같은 안내문(7월 1~4일 순차적 발송으로 약 2주 소요 예상)을 발송하였습니다.

시행령 개정 시행일 기준, 연장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수급자가 제시 가능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(복지용구 포함).

기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	별도 서류 없이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(수급자) 제시 및 확인
새로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	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와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(수급자) 제시 및 확인

※ 안내문은 **재발급이 불가**하므로, 분실하였다면 연장된 유효기간이 기재된 인정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서 새로 발급받아 제시해야 합니다. 기관에서 안내문 보관은 불필요합니다.

※ 수급자의 생년월일 등 **본인 여부를 꼭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 동명이인 등 타인 명의 등록 시, 급여비용 착오지급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 1부.
2.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관련 계약통보 Q&A 1부.

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

소통과 배려로
국민과 함께
하겠습니다.

수신자	귀하		
장기요양인정번호	(-)	장기요양등급	0등급

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편의성과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갱신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연장 적용하였습니다. ※ 관련근거: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시행령 개정('25년 7월 1일 시행)

따라서 귀하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
구분	유효기간
변경 전	0000.00.00 ~ 0000.00.00
변경 후	0000.00.00 ~ 0000.00.00

[주요 변경내용 안내]

인정등급	변경 전 유효기간		변경 후 유효기간	
1등급	갱신결과	4년	갱신결과	5년
2등급~4등급	동일 등급인 경우	3년	동일 등급여부와 무관	4년
유의사항	1. 본 안내문은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연장된 유효기간을 같음합니다.			
	2. 변경 전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갱신 신청 예정이었던 수급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<u>변경 된 유효기간을 반영하여</u>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. ※ 심신기능상태 변화로 장기요양등급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등급변경신청 가능			
	3.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,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연장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맞춰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서 작성을 포함한 새로운 급여계약체결이 필요합니다. (복지용구 포함)			
	4. 장기요양인정서 등 서류 발급이 필요한 경우 - 관할 운영센터로 유선문의 후 내방 또는 우편 발송 신청 - 인터넷 발급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, 정부24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			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

문의



관할 운영센터(



고객센터 1577-1000

운영센터)

000-000-00000

(이용요금: 발신자 부담)

붙임2

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관련 계약통보 Q&A

Q1

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적용으로 급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관에서 수급자가 제시한 안내문을 확인해야 하는데, 안내문을 보관해야 할까요? 안내문 보관하지 않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(재가.시설)에 영향은 없나요?

- ☞ **계약-** 시행령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한하여,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으로 유효기간 연장된 인정서 등 3종 서류를 갈음합니다. 따라서, 연장 안내문을 제시한 수급자에 대해 급여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 안내문 보관은 불필요합니다.
- ☞ **평가-**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의 내용 확인 의무와 이를 바탕으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는 있으나 관련 서류(사본)의 보관 의무는 없습니다.

※ (관련근거)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7조(장기요양급여의 제공), 동법 시행규칙 제16조(장기요양급여 계약 등)

Q2

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수급자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나요?

- ☞ 아닙니다.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조정되는 대상은 갱신 대상자만 해당되며 최초·재신청·등급변경신청 대상은 제외됩니다. 시행령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수급자는 **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할 때까지 추가로 계약통보 하지 않아도 됩니다.**

Q3

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추가로 계약 통보를 할 때 어떤 등록버튼을 눌러야 하나요?

- ☞ 「신규등록」 또는 「추가등록」을 통해 계약등록이 가능합니다.

급여계약통보서 등록 npi1111111

급여계약통보서 등록 초기화 저장 닫기

장기요양대상자

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
인정등급 인정유효기간

- 신규등록: 최초 계약
 - 갱신등록: 갱신, 등급변경으로 새로운 인정유효기간이 생성되어 계약 등록을 하는 경우
 - 추가등록: 인정유효기간 종료 전,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추가로 계약 등록을 하는 경우
- ※ 갱신·추가 등록은 편의기능으로 모든 계약통보는 신규등록 통해 가능함